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66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구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곽경화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근수

변론 종결2022. 10. 20.

판결 선고2022. 12.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21. 1. 8. 접수 제31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2020. 2. 18.자 63,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B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C에 발급하여 주었다.

- 다 음 -

(가) 보증번호: D

(나) 보증금액 : 53,550,000원 (보증비율 : 85%)

(다) 보증기한: 2025. 2. 13.

나. B의 원리금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2021. 9. 16. 주식회사 C에 50,597,0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21. 1.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21. 10. 18. 기준 가액은 665,000,000원 상당이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21. 1.경 B은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B의 그 무렵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E 은행	432,000,000	갑 제11호증 경매실행예정통지서 참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21,609,300	갑 제12호증 교부청구서(최고서) 참조
가압류권자 F	146,000,000	갑 제8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5번 참조
국 (남대구세무서장)	106,222,980	갑 제13호증 교부청구서 참조
C (원고 보증채무)	58,950,000	2022. 4. 8.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참조
피고의 채권액	250,000,000	2022. 4. 18.자 피고 답변서 참조
합계	1,014,782,280원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2021. 1.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가 주식회사 E인 채권최고액 321,600,000원, 채권최고액 196,8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위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위 표에 기재된 432,000,000원 상당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인 2021. 1. 8.경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계약 체결 무렵 가까운 장래에 위 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 체결 이전인 2020. 5.경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위 계약 체결 무렵인 2021. 1. 13.경 일반채권자인 H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가압류등기가, 위 계약 체결 이후인 2021. 3. 11.경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짐. 한편, B은 2021. 6.경 주식회사 C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함), 실제로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²⁾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³⁾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영위하는 사업의 존속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고 이에 대한 담보를 피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8. 10.경 B에게 100,000,000원을, 2020. 5.경 1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B에게 2018년경 대여한 100,000,000원이 B의 사업 계속 추진 내지 채무변제력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20. 5.경부터 2020. 12.경 사이 합계 261,334,120원의 양도소득세(귀속연도: 2019년)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B에게 위와 같이 2019년경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2020년경 변제한 것이 B의 채무 변제력 회복을 위한 방책에 해당한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신영

별지

- 1)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포함.
- 2) 적극재산: 665,000,000원 상당(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극재산: 1,014,782,000원(표 참조)
- 3) 선순위근저당권이 있으나 여전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이 있음. 공동담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할 경우 146,600,000원 상당(= 부동산 가액 665,000,000-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21,600,000원 - 196,800,000원)이고,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기준으로 할 경우 233,000,000원 상당임(= 부동산 가액 665,000,000 - 432,000,000원)